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보건소 의약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22호
- 나. 제출자 : 고성미 의원, 이인식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3.

## 2. 제안이유

최근 혼인 연령대의 상승 및 임신·출산 시기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바,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및 다태아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신·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다태아 임신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5조제8호)
- 나.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5조제9호)

## 4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4 및 제11조의7
-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및 다태아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신·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 - 안 제5조제8호에서는 다태아 임신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,
  - 안 제5조제9호에서는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.
-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사회 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.
- 다태아 임신은 산모의 건강 합병증과 조산, 저체중 출산 등 고위험 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되며, 이에 따라 출산 후에도 의료 및 양육 부담이 상당한 바,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바람직 함.
- 생식세포 보존 지원 규정 신설은 항암치료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가임력 상실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향후 임신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생식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적절한 제도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,
- 특히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에서도 생식건강 및 출산 환경 개선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어, 해당 지원은 관련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됨.

- 본 조례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의료복지 향상,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지역 인구구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관련내용 부서 사업 현황 1부. 끝.

**모자보건법**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9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**제10조의4(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22.]

**제11조의7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23.]

**모자보건법 시행령**

[시행 2025. 1. 24.] [대통령령 제35207호, 2025. 1. 14., 일부개정]

**제14조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2. 부속기종양적출술
3. 난소부분절제술
4. 고환적출술
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
6. 부고환적출술
7.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
  - 가. 항암제 투여
  - 나.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
  - 다. 면역 억제 치료
8.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
  - 가. 터너증후군
  - 나. 클라인펠터증후군
  - 다.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

[본조신설 2025. 1. 14.]

□ **다태아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**

○ **사 업 명 : 임신부 엽산제·철분제 지원**

- 지원대상 : 관내 임신부

- 지원내용

▶ 엽산제 : 임신 확인일로부터 12주 이내 지급(최대 3개월분)

▶ 철분제 :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지급(최대 5개월분)

※ 다태아 추가지원 내용 : 철분제 2배 지급

- 추진실적(2025년 04월말 기준)

▶ 엽산제 336명, 철분제 211명 지원 ⇒ 다태아 9명 해당

○ **사 업 명 :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**

- 지원대상 : 다태아 임신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

- 지원내용 :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% 지원

※ 다태아 추가지원 내용 : 다태아 임신부는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됨

- 추진실적(2025년 04월말 기준)

▶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의료비 24명 지원 ⇒ 다태아 2명 해당

○ **사 업 명 :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**

- 지원대상 :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서울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
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 지원

※ 다태아 추가지원 내용 : 쌍태아 200만원, 삼태아 300만원 지원

- 추진실적(2025년 04월말 기준)

▶ 단태아 312명 지원, 쌍태아 6명 지원, 삼태아 1명 지원

## □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

○ 사업명 : 영구 불임 예상 남자·정자 냉동 지원

- 시행일자 : 2025. 4. 28.(월)

- 지원대상 :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

- 지원내용

▶ 지원항목 : 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 채취, 동결, 보관 비용 일부

▶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50%(여 200만 원, 남 30만 원 한도)

▶ 지원횟수 : 생애 1회. 끝.